#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

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528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0. 5. 25.

4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# Ⅱ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제1항제5호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8조의 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)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·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'19년도 말 조성액(a)	'20년도 기금운용계획		'20년도 말 조성액(e)	융자금 미회 <del>수</del> 채권	총규모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± 6 ¬ (e) (d=a+b−c)	(e)	(f=d+e)
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	0	1,000,000	353,600	646,400	0	646,400

※ 집행(사용)계획은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### Ⅳ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[참고자료1]
  -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
 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
  -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
- 시도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현황: [참고자료2]

### 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28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기금 개관

-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·학예 분 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 로,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 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의 확대·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·활성화를 위해 'DMZ 생태평화체험', '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'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,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

### [표-1] 2019년 서울시교육청 '남북교육교류' 추진 사업 내용 및 예산액

남북교육교류 추진 사업	소요 예산 (단위: 천원)			
	예산액	집행액	집행잔액	
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	50,000	0	50,000	

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	190,000	0	190,000
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	10,000	9,526	474
합 계	250,000	9,526	240,474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 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19.7.18.)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・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 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.

#### 나. 수입 지출 계획

O 금번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영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10억원으로, 수입계획의 재원은 "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"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14조제2항에 따르면1)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조례상의 재원 조성 출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재원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기금 운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기금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속한 조례

<sup>1)</sup> 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또한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에²)따라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의회 및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는바.

서울시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한편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, 예치 금 6억 4천 6백만원으로 총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비융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지역 역사유적 지, 교육기관, 생태환경 등 현장체험학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북 측의 교육당국, 학교, 학생 대상 교육분야 교육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

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1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<sup>3)</sup>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지출액 중 예치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인 농협은행(농협 중앙회)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

제1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<sup>2)</sup>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 1.~4. 생략

<sup>5.</sup>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
<sup>3)</sup>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

<sup>1.</sup>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
<sup>2.</sup>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<sup>3.</sup>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

동 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제16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약칭: 지방기금법)」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지방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(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, 2008.3.11.)」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」에<sup>4)</sup> 따라 기금별로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다. 끝으로

- 동 운용계획안은 동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와 함께 남북교류 사업이 교육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, 사회, 문화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 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

<sup>4)</sup>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, 2008.3.11.제정)

가. 기금자산관리(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)

<sup>-</sup>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※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<u>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</u>

나. 기금여유자금 관리

<sup>- &</sup>lt;u>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, CD 등 저축성 예금, 국·공채 투</u>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

<sup>- &</sup>lt;u>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, 기업자유예금,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, 지출 시기 등을</u>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

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 금 운용 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계 법령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0.4.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1.29., 일부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제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· 운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・지출・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・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  -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  -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- 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

- 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)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  - 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
  - 2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
  - 3.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  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 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 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- 2. 「재해구호법」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  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-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 -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7. 18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214호, 2019. 7. 18., 제정]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·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 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"(이하 "협력사업"이라 한다)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협력사업의 기본 원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 래·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협력사업의 범위)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·단체와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
- 2.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
- 3.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

- 제6조(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)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  - 2.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  - 3. 협력사업의 중·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
  - 4.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
  - 5.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
  - 6.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)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, 자치구,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  -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

- 제8조(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2.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  - 1.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
  - 2.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 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  - 2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제12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 성명,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.
  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.
  -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
- 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제1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 - 1.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  - 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 - 3.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
- 제1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을 따른다.
  -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남북교육 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
  -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-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,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.
  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  - 1.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  - 2.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
  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1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 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  - 2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제21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2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.
- ⑤ 심의위원회는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 성명,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제23조(포상)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, 학생,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. 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